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3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천준호·송재봉·박정현
최혁진·김남희·서왕진
김 윤·이주희·주철현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 6호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모집비용”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금액 이상의”를 “금액(이하 “등록대상금액”이라 한다)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대상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모집한 기부금품의 금액이 모집목표액을 초과한 모집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⑨ 등록청은 제7항이나 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등록 또는 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3조 중 “15”를 “30”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를 “모집비용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1년”으로,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를 “속임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대상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모집한 기부금품의 금액이 모집목표액을 초과한 모집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등록청은 제7항이나 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등록 또는 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
② (생략)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년-----
-----3년-----

있다.

④ (생략)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

-----30-----

-----모집비용에-----
-----.

제16조(벌칙) ① -----
-----1년-----
-----1천만원-----
-----.

1. 속임수나-----

2. ~ 7. (현행과 같음)

<삭제>

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
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
한 자

제18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
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
한 자

② -----
-----300만원-----
-----.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

-.